

##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

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김재혁 분석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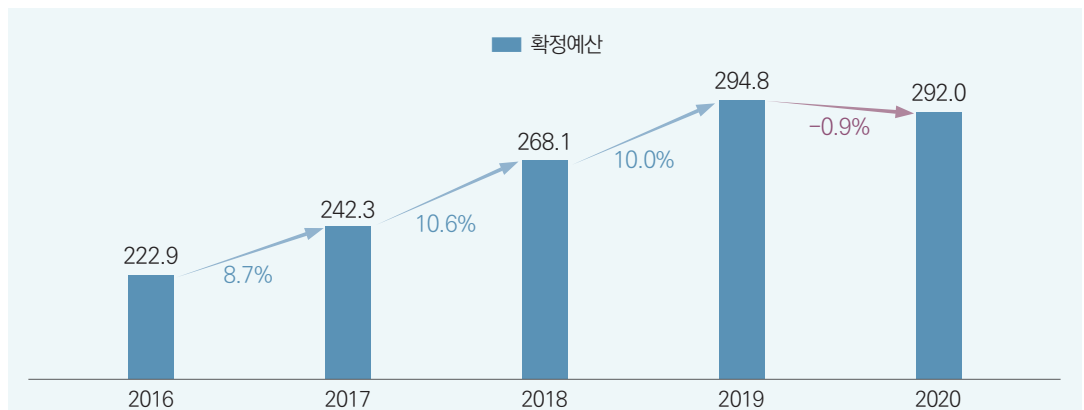
###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

- 금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확대, 과세체계 조정 및 과세형평 강화에 방점
  -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,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,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, 주세 과세체계의 증량세 전환 등

### 확정된 2020년도 국세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

- 2020년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 9,969억원으로 확정
  -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92조 391억원 중 422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
  -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20년은 전년 대비 0.9% 감소

(단위: 조원)



국회 수정 사항	조항	조항	조항	조항	조항
국회 수정 사항	• 조합 예탁금 등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연장	•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	•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축소	•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	•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
	• 증여세 공제액 상향	• 상속·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	•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유예	• 유류세 한시 인하	• 제주도·위기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

투자 및  
소비지원 위한  
조세감면 확대

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

-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내국인이 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투자 시 투자 금액의 1~7%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  - 대상자산: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, 첨단기술설비, 공급망 관리시스템설비
- 2020년부터 대기업 2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의 공제율 적용
  - 중견 및 중소기업은 2021년까지, 대기업은 2020년까지 적용
  - (쟁점) 대기업 공제율 축소 기조 유지와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의견

[표 1]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관련 개정내용 비교

공제율	현행	개정내용
대기업	1%	2% (1년 한시)
중견기업	3%	5%
중소기업	7%	10%
적용기한	2019.12.31.	2021.12.31.

●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및 연장

- 대기오염 완화와 신차 수요 증진을 위해 노후자동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확대 및 연장
- 차령 10년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현행 5%에서 1.5%로 6개월간 감면
  - 현행 차령 10년이상 경유차가 감면 대상이나 보다 확실한 자동차 수요진작과 환경개선 효과를 위해 전 차종으로 확대
  - 단, 노후경유차를 신규 경유차로 교체 시 감면 대상 제외
-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
  - 환경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효과 동시 가능
  - (쟁점) 국산 수소전기차는 단일회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특정기업 혜택 편중에 대한 우려

[표 2] 노후차 개별소비세 관련 개정내용 비교

	현행	개정내용
대상차종	10년 이상 노후경유차	10년 이상 노후차(휘발유, 경유, LPG)
교체차종	모든 연료 차종	휘발유 및 LPG 차종
감면율	개별소비세액의 70% (현행 5% → 1.5%, 대당 100만원 한도)	
적용기한	2019.1~12월	2020.1~6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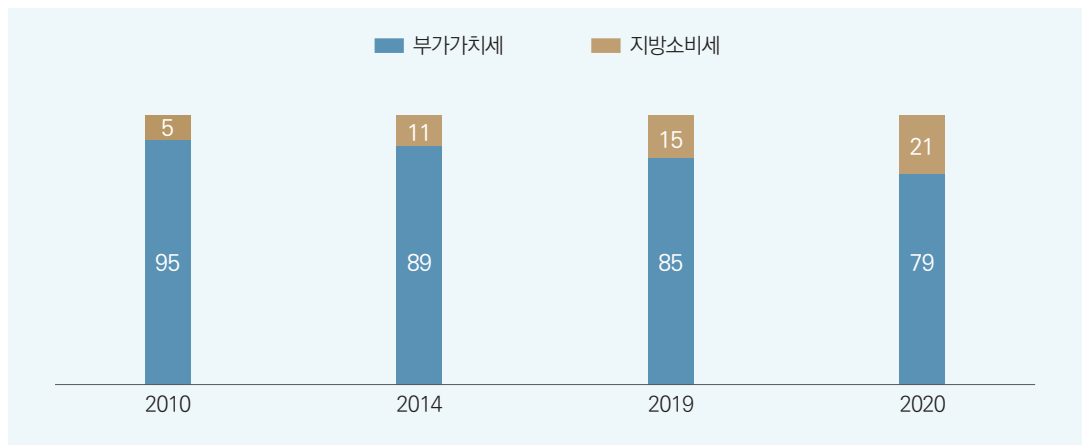
과세체계 조정

●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

-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15%에서 21%로 6%p 인상
  - 해당 규모만큼의 세입 귀속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하는 것이므로, 국가 전체로 볼 때 세입 증감은 없음
- 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양비율의 인상에 대해 공감대 형성
  - (쟁점) 부가가치세의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기반 약화와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

[그림 1]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변화 추이

(단위: %)



● 탁주와 맥주에 대한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

-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세체계 전환
- 현행에 따르면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수입주류보다 크다는 지적
  - 현행 국산주류의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에는 이윤과 판매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는 반면,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
  - (쟁점) 생맥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조치 필요 의견

[표 3]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전환 개정 내용

	현행	개정내용
과세표준	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	출고수량 또는 수입신고수량
탁주	5%	41.7원/ℓ
맥주	72%	830.3원/ℓ
기타	-	생맥주에 한해 2021년까지 664.2원/ℓ 적용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

과세형평 강화

●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

- 근로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
-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2천만원의 한도 설정
  - 총급여 3억 6,25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제한
  - (쟁점) 세수 확충을 위해 면세자 비율 축소도 병행할 필요 있다는 의견

[표 4] 근로소득공제율 연혁

(단위: %)

총급여액	공제율		
	2010~2011	2012~2013	2014~현재
~500만원	80	80	70
~1,500만원	50	50	40
~3,000만원	15	15	-
~4,500만원	10	10	15
4,500만원~	-	5	-
~8,000만원	5	-	-
~1억원	3	-	5
1억원~	1	-	2

개정세법의  
세수효과

● 세수는 2020년 2,323억원, 2020~2024년 누적 1조 4,589억원의 감소 예상

- 소득세 5년 누적 1,497억원 증가 예상
  -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(3,772억원),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△1,469억원) 등
- 법인세 5년 누적 1조 4,778억원 감소 예상
  -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별 적용률 상향(△7,108억원),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(△5,797억원),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(△377억원) 등
- 개별소비세 등 기타 5년 누적 1,275억원 감소 예상
  -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(△673억원) 등

[표 5]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전체	△ 2,323	△ 8,865	△ 4,175	△ 3,757	4,531	△ 14,589
소득세	317	118	152	412	498	1,497
법인세	△ 624	△ 8,408	△ 4,486	△ 4,354	3,094	△ 14,778
부가가치세	△ 853	△ 28	34	25	790	△ 33
개별소비세 등 기타	△ 1,164	△ 546	125	161	148	△ 1,275

주: 1. 세수효과는 누적법 기준으로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  
 2.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국세 감소분 미반영